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판 결

사 건 2009가단22289 손해배상(기)

원 고 1. 김○○  
2. 최▷▷  
3. 최◁◁

원고들 주소 성남시 분당구  
원고 2,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◇◇  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◇◇  
담당변호사 ◇◇◇

피 고 김○○  
포항시 남구  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◇◇  
담당변호사 ◇◇◇

변 론 종 결 2010. 9. 10.

판 결 선 고 2010. 10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김○○에게 25,073,306원, 원고 최▷▷, 최◁◁에게 각 1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. 2. 14.부터 2010. 10. 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

값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김○○에게 67,873,625원, 원고 최▷▷, 원고 최◁◁에게 각 4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. 2. 14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### 이 유

#### 1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##### 가. 인정사실

1) 피고는 2009. 2. 14. 18:41경 4시간 가량의 스키강습만을 받은 상태에서 경기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 ●●●●●에 있는 ◎◎리조트 스키장 중급코스 2번 슬로프에서 활강을 하던 중 전방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던 원고 김○○를 발견하였으나 방향을 전환하거나 제동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들이받아 원고 김○○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 김○○로 하여금 흉부 압박골절 및 경추간판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.

2) 당시는 야간인데다 기온이 낮아 얼어붙은 눈으로 인해 슬로프가 매우 미끄러운

상태였고, 그곳에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.

3) 원고 김○○는 스키강사 경력이 있는 자이고, 원고 최▷▷, 최◁◁는 원고 김○○의 자녀들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~7, 10, 11, 1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◎◎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증인 ○○○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# 나. 판단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스키를 타는 경우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활강시 전방좌우를 제대로 잘 살피며 적절한 방향전환 및 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,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 김○○와 원고의 직계비속인 원고 최▷▷, 최◁◁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) 피고는 원고 김○○에게도 전방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는 50%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증인 ○○○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 김○○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갈 당시 후방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피고가 예측하지 못할 만큼 큰 폭으로 횡단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의 주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원고 김○○에게 후방에서 접근해 오는 피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위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## 2. 손해배상의 범위

아래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(이하 계

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월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,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/12%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).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.

#### 가. 일실수입

##### 1)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

가) 인적사항 :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.

나) 직업 및 소득 : 도시일용노동,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보통인부의 노임

다) 후유장애와 노동능력상실률

##### (1) 흉추부 압박골절 :

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척추손상 I-A-1-c 1년 한시장해 32%

##### (2)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:

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척추손상 V-B 4년 한시장해 18%

(기왕증 기여도 40% 고려함)

○ 원고 김○○는 경추부 수술을 전제로 한 척추손상 V-D-2-b 영구장해 14.4%(기왕증 기여도 40% 고려함)를 주장하나, 원고 김○○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신경근 및 척수 압박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경계의 저항력으로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수술을 미루고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서, 수술하지 아니하고 신경학적 손상 없이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,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 원고 김○○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

2) 계산 :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 14일 동안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%로

계산하여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.

나. 간호비

기왕 간호비로 입원기간 14일 동안 성인여자 1인 간호를 인정한다.

다. 치료비

기왕 치료비로 2,124,950원을 인정하고, 앞서 본 이유로 경추부 수술을 전제로 한 원고 김○○의 향후 치료비 300만 원 주장은 배척한다.

라. 보조구 구입비

기왕 보조구 구입비로 350,000원을 인정하고, 앞서 본 이유로 경추부 수술을 전제로 한 원고 김○○의 향후 경추보조구 구입비 20만 원 주장은 배척한다.

마. 공제

기지급금 240만 원

바. 위자료

1) 참작한 사유 : 원고들의 나이, 이 사건 사고의 경위,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, 치료경과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

2) 결정 금액

원고 김○○ : 7,000,000원

원고 최▷▷, 최◁◁ : 각 1,000,000원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8, 9, 19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,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3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는 원고 김○○에게 25,073,306원(= 재산상 손해 18,073,306원 + 위자료 7,000,000원), 원고 최▷▷, 최◁◁에게 각 1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. 2. 14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. 10. 1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     김수영 \_\_\_\_\_